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7월 10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(김중욱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안이유

-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
 -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(6명 → 7인 이내)
-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
 -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(6인 이내 → 7인 이내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7월 15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

제1조(「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항 중 “6명으로”를 “7인 이내로”로, “1명”을 “1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명”을 “2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6인 이내”를 “7인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) ① (생략) ② 제3조와 제4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<u>6명으로</u>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<u>1명</u> 을 지정한다.	제2조의2(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 <u>7인 이내로</u> ----- ----- ----- <u>1인</u> ----- -----.
제3조(위원장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, 최다선위원이 <u>2명</u>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3조(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2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<u>6인 이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「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하여 선임한다. ④ · ⑤ (생략)	제3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7인 이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